

화성 동탄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신청 관련 주민 재공람 · 공고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, 제59조의2 및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8조, 제9조 따라 화성 동탄물류단지 부분재정비사업 계획(안)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 · 공고합니다.

2026. 07. 21.

화 성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: 화성 동탄물류단지 부분 재정비사업
- 위 치: 경기도 화성시 신동 704번지
- 면 적: 460,669.8㎡ 중 9,000.0㎡(물류단지 전체의 2.0%)
- 시행자: 에이치엘로지스앤코 주식회사

2.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내용

- 화성 동탄물류단지 부분재정비사업 계획(안)
※ 게재생략 (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)

3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1) 열람기간 및 장소

- 열람기간: 2026년 7월 21일~2026년 8월 10일 (공고일로부터 20일간)
- 열람장소: 화성시청 주차물류과(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시청로 159, 3층 주차물류과)

2)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: 열람기간 내
- 제출방법: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

4. 기타사항

- 당해 열람(안)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(관계기관 협의 등)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, 열람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 등은 금지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주차물류과(☎031-5189-235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